# 서울특별시 서울리츠 3호(공공주택사업자) 출자 동의안

의 번 호

1200

제출년월일: 2023년 8월 14일 제 출 자: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07년 이후로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기존 공공임대주택제도와는 다르게 전세계약 방식과 다양한 공급면적의 장기전세주택 제도를 도입하여, 2022년 6월 기준 33.347호를 서울시민에게 공급하였음.
- 나. 이 중 대형평형 장기전세주택은 국고보조금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없이 시비가 전액 투입된 사업(85㎡초과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건설사업비의 58.9%(3,513억원)를 서울주택도시 공사자금으로 조달)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재정부담이 가중되었으며, 행정자치부는 서울주택도시공사 공사채 발행 한도를 부채비율과 연동하여 승인함으로써 신규사업 및 임대주택 공급에 어려움을 겪었음.
- 다. 이에 따라 2016년 제271회 시의회에서 현금출자(197,120 백만원) 및 현물출자(19호)승인 받았으며, 현금출자는 12년 동안(`16년~`27년)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된 사항임.
- 라.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 및 `21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 운영계획 수립기준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출자기관 개요
  - 1) 기관명칭 : ㈜서울리츠임대주택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
  - 2) 자 본 금 : 173,673백만원
  - 3) 주주구성
    - 서울시 출자금 : 202,717백만원(89.3%)

(현금197,120백만원, 현물5,597백만원)

-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금 : 24,280백만원(10.7%) (현금24,280백만원)

- 나. 출자 추진근거 및 필요성
  - 1) 추진근거 : 대형 평형 장기전세주택 리츠 운영계획(안) (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74호, 2016.9.13)
  - 2) 필요성
    - 출자기관의 장기전세주택 매입을 통한 서울주택도시공사 재정부담 경감
    -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재정부담 경감 및 부채비율 완화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추가 사업여력 확보
- 다. 주요사업: 장기전세주택(85㎡ 초과) 2,450호 임대 운영 및 관리

### 라. 현금출자

- 1) 출자계획
  - 총 197,120백만원[12년('16~'27)동안 분할하여 지급]

(단위 : 백만원)

2016	2017	2018	2019	2020	2021
24,280	24,280	24,280	24,280	12,140	12,140
2022	2023	2024	2025	2026	2027
12,140	12,140	12,140	12,140	12,140	15,020

2) 금회 현금출자 : 12.140백만원('24년도 분)

마. 의사록 및 결산보고서 : 별도 첨부

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재정법,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, 부동산투자

회사법, 공공주택특별법

1)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2) 「부동산투자회사법」 제5조(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)

3) 「공공주택 특별법」제4조(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)제1항 제6호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 성 자 : 공공주택과 역세권주택팀 최가람 (☎ 2133-7059)

#### 「지방재정법」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야 한다.

## 「부동산투자회사법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나.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: 자산의 투자·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

제5조(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)

-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.
-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「상법」 제290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을 할 수 없다.

# 「공공주택특별법」

- 제4조(공공주택사업자)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한다.
- 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
- 2. 「한국토지주택공사법」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
- 3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
- 4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
- 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·설립한 법인
- 6. 주택도시기금 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(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)하여 「부동산투자회사법」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